

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957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3. 16.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3. 17.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06. 3. 28. 총무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- 1981년 1월부터 고성군 수입증지 판매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수입증지 판매시 판매인에게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게 100분의 5로 인상함. (안 제19조)

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 2005-660호(2005. 12. 29. ~ 2006. 1. 18.)
- 의견 및 제출사항 없음

나. 관련법령

-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제19조(판매인 수수료)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고성군 수입증지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은

-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증지 판매인 수수료를 증지 액면가액의 3/10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남도내 고성군과 의령, 함안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 요율인 5/100에 비해 형평이 맞지 않고 1981년부터 25년간 계속된 증지 판매수수료 요율을 변경하고자 함이었습니다.

○ 따라서 도내 타시군에 비해 낮은 증지판매 수수료율 인상을 위해 입법예고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증지판매 현황과 수수료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

- 2006. 3. 2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